

충주시체육회 사무국 직원(일반직)채용 공고

충주시 체육발전을 선도하고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체육을 이끌어 나갈 참신하고 유능한 충주시체육회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
2026년 1월 2일

충주시체육회장



1. 모집분야 및 인원

모집분야	직급	인원	주요업무
팀장급	일반직 6급(경력직)	1명	체육관련 실무업무 팀 총괄담당

2. 응시자격

- 가. 성별, 신체조건, 용모, 학력, 연령 등 제한 없음
- 나. 체육회(시군구, 도단위 이상) 사무국 10년 이상 근무 경력자
- 다. 「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」제9조에 따른 전문스포츠지도사 및 생활스포츠지도사 소지자
- 라. 사무 자동화(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) 자격 소지자
- 마.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공개채용 최초공고일 전날(2026.1.1)부터 최종시험(면접시험)까지 계속하여 충주시에 등록된 자
- 바.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사. 충주시체육회 사무국운영규정 제15조(결격사유)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아.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
○ 결격사유(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15조(채용 결격사유)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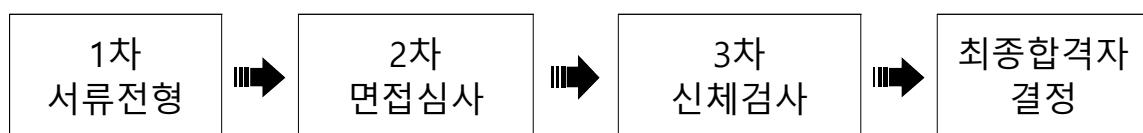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.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.
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.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.
8.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.

3. 보수 및 근무지

- 가. 보 수 : 충주시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(제6장)에 따라 지급
나. 근 무 지 : 충주시체육회(충주시 대림로 85 충주종합운동장 내)

4. 전형절차 및 채용일정

가. 전형절차



나. 채용일정

구 분	일 정	합격자 발표
공고/원서접수	2026. 01. 02.(금) ~ 01. 13.(화)	12일간, 09:00~18:00
1차 서류전형	2026. 01. 14.(수)	2026. 01. 14.(수)
2차 면접심사	2026. 01. 16.(금)	2026. 01. 19.(월)
임용 예정일	2026. 02. 01.(일)	2026. 2. 2(월)부터 근무

- ※ 임용후보자 등록기간(신체검사 포함) : 2026. 01. 26 ~ 01. 30
- ※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등 채용일정에 따른 사항은 충주시체육회 홈페이지
(<http://www.cjsport.kr>) 체육회 소식 「고시/공고」 란에 게재

5. 평가방법

가. 1차 서류전형

- 1) 응시원서 접수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실시
- 2) 배점기준에 따른 정량평가 실시
 - 직무관련 경력 및 자격증, 운전면허 등
- 3) 합격자 결정
 - 제출된 자료에 근거, 평가 후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 - 서류전형시 부적격자는 탈락처리

나. 2차 면접심사

- 1)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실시
- 2) 응시번호 순으로 개별면접 실시
 - 전문지식과 응용능력, 논리성, 사회성, 일반상식, 자기소개 등 평가
- 3) 합격자 결정
 - 평가점수(최고·최저점 제외) 합산 후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 - 동점일 경우 면접전형 순위가 높은 자로 결정
 - 위원의 과반수가 평가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'매우미흡'으로 평가하였거나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가항목에 대하여 '매우미흡'으로 평가한 때에는 불합격
 - 합격자로 결정된 자의 채용 결격사유가 확인 될 경우 합격 결정 취소
- 4) 최종합격자 후순위로 예비합격자 3명 선발
 -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,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, 임용3개월 이내 퇴사 시 예비합격번호 순으로 충원
 - 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6개월로 하되, 해당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한다.

다. 3차 신체검사

- 1) 등록기간 내(건강검진 서류 제출로 대체)

라. 최종합격자 발표

- 1) 충주시체육회 홈페이지 공개 및 개별 통지

6.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

가. 응시원서 서류접수

- 1) 접수기간 : 2026. 1. 2.(금) ~ 1. 13.(화) 09:00~18:00 / 12일간
- 2) 접수처 : 충주시체육회 사무국 총무팀 인사담당자 043-850-7331
 - 주소 : 충북 충주시 대림로 85 충주종합운동장 내 충주시체육회
- 3)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
 - 근무시간(09:00~18:00)내 접수가능 *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
 -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(2026. 1. 13.)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, 접수기간 내에 유선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하고 응시번호를 부여 받아야 함.
(우편접수자의 접수증 및 수험표는 2차 면접심사일 현장 교부함.)

※ 모든 증빙자료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에 한하며, 응시원서 및 제출서 양식은 [충주시체육회 홈페이지](http://www.cjsport.kr)(<http://www.cjsport.kr>) 체육회소식 「고시/공고」에서 다운 받아 작성

나. 응시원서 접수자 제출서류

- 1) 응시원서 1부 (별지 제1호 서식)
- 2) 이력서 1부 (별지 제2호 서식)
 -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
- 3) 자기소개서 1부 (별지 제3호 서식)
- 4)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
- 5) 경력증명서 1부
 - 근무기간, 담당업무,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등 명시
 -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불명확할 경우와 폐업 등의 사유로 업무내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- 6)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(병적사항 포함) 각 1부
- 7)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- 8) 서약서 1부(별지 제4호 서식)

- 9)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(별지 제5호 서식)
- 10)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(별지 제6호 서식)
※ 필요한 경우에는 신원관계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7. 응시자 유의사항

- 가.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나.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.
※ 서류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다. 경력증명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라. 임용은 채용신체검사, 결격사유 조회 및 신원조사 후 최종 결정하며,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.
- 마.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접수일 7일전까지 충주시체육회 홈페이지 「공지사항」란에 공고합니다.

충주시체육회 사무국운영규정(제15조) 및 지방공무원법(제31조) 결격사유

제15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<개정 2019. 10. 11>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.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.
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.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.
8.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.

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